

# 2015년 단체 협약서

2015년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지부 단체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시행하기로 한다.

## - 다음 -

2015년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협약과 지방의료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지부단체협약에 수정 · 보완 · 삽입한다.

1. 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등 결원 인력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 인 결원인력을 확인하여 정규직 T/O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. (단협 39조제5항 삽입)

### 2.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

#### ① 직장내 폭언 · 폭행 예방 조치 (단협 제66조 제1항 삽입)

가. 병원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내 폭언 · 폭행 금지에 대한 직원 인권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

나.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폭언 · 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.

다. 병원은 신규직원 교육이나 정기적인 직원교육, 혹은 원내통신망을 통해 직장 내 폭언 · 폭행금지에 대한 병원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조회나 원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폭언 · 폭행금지 캠페인,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.

라. 병원은 직장내 폭언 · 폭행관련 신고센터 혹은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, 폭언 · 폭행예방 교육과 상담, 조사,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담당자를 둔다.

#### ② 직장내 폭언 · 폭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 조치 (단협 제66조제2항 삽입)

가. 병원은 직장내 폭언 · 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직장내 폭언 · 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담당부서에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- 나. 병원은 병원내 폭언·폭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며 징계 위원회를 개최한다.
- 다. 병원은 폭언·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충 해결을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.
- 라. 병원은 폭언·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급휴가를 준다.
- 마. 병원은 내원 환자·보호자에 의한 각종 폭언·폭행 등의 인격모독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, 해당 내원 환자·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.

### ③ 근무조건 만족도 높은 좋은 병원 만들기

- 가. 병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,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 한다. (단협 제43조제8항 삽입)
- 나. 업무와 관련한 출장, 교육, 회의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.(단협 제43조제9항 삽입)
- 다. 병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분석하고, 2015년 말까지 시간외근무 해결대책을 마련한다.(단협 제43조제10항 삽입)
- 라. 병원은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과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근무표 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.(단협 제43조제11항 삽입)
- 마. 노사 양측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 모델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.(단협 제43조제12항 삽입)
- 바. 병원은 주40시간 주5일제 합의 이행을 위해 토요근무를 점차 축소한다. (삭제)

2016. 01. 19.

“갑”

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

김 영 진



“을”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

유 지 현

